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가격등의 표시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공장도가격, 수입가격 또는 소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업자(하청주문에 의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주문자), 무역업자 및 소매업자를 말한다
2. “가격표시”는 공장도가격표시, 수입가격표시 및 소매가격표시로 구분한다.

제 3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표시의무자로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등의 표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
3.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제 4조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

제 5조 (과태료의 부과 및 청문) ①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방법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6조 (이의신청)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원)

구 분	관련 법규	대 상 자	과 태 료			
			1 차	2 차	3 차	4 차
1. 공장도(수입)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조(수입)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2. 소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기타소매업자	시정권고	100	300	500
3.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을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표시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시정권고	300	500	1,000
		기타소매업자	시정권고	100	300	500
4.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조(수입)업자	500	1,000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500	1,000		
		기타소매업자	300	500	1,000	

위 반 내 용	관련 법규	대 상 자				
			1 차	2 차	3 차	4 차
5.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물가안정에관 한법률 제3조	제조(수입)업 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기타소매업자	시정 권고	50	100	300
6. 공장도 또는 수입가 격표시를 훼손 또는 고의로 은폐하는 행 위	물가안정에관 한법률 제3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300	500	1,000	
		기타소매업자	100	300	500	
7.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 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자	물가안정에관 한법률 제16 조 제1항. 제29조제1항 3호·4호	제조(수입)업 자	시정 권고	300	500	1,000
		대규모소매점 대형점사업자	시정 권고	300	500	1,000
		기타소매업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 시정권고사에는 1개월간의 기간을 주고, 처분기준의 회차별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시식)

확 인 시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자가 상기소재 점포에서 취급하는 ○○○ 상품중 공장도가격
· 수입가격 · 소비자가격 미표시 상품이 있음을 확인함.

구 분	상 품 명	수 량	제 조 (수 입), 소 매 업 자			수 입 국 (제 조 원)
			상 호	소 재 지	대 표	
공장도 · 수입 · 소비자가격 미표시						

199

확인자 주소

성명 (날인, 서명 또는 손가락
도장)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와의관계 (의)

조사자 직

성명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업소명	
과태료금액		
<p>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제 호 과태료납부서		
위반사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업소명	
과태료금액		
<p>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p> <p>년 월 일</p> <p>(납부자성명) ○ ○ ○</p>		

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업소명	
과태료금액		
<p>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 ○ 금고 (인)</p> <p>도지사(○ ○) 귀하</p>		

제 호 영수증		
위반사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업소명	
과태료금액		
<p>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p> <p>년 월 일</p> <p>○ ○ 금고 (인)</p> <p>(납부자성명) 귀하</p>		

80mm x 160mm
신문용지 54g/m²

※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처분청		수납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불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날인, 서명 또는 손가락
도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